

2026.3.20.(금)

현시정보

상해주재원

제목 중국, 단기차익거래 감독관리 규정 발표

□ 중국은 단기 차익거래 규제 제도의 구체화 및 증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'단기차익거래 감독관리 규정'을 발표하고 시행(4.7일)을 예고

- 동 규정은 대주주·임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, 외국 기관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함으로써 투기·불공정 거래 등 중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

[규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]

-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)는 「단기차익거래 감독관리 규정」(关于短线交易监管的若干规定)을 제정·발표(3.6일)하고 오는 4월 7일 시행을 예고
 - 동 규정은 증권법상 단기 차익거래 규제 제도를 구체화하고 증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2019년 증권법 개정 이후 부재했던 단기차익거래 규제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
 - 금번 규정 제정은 기존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시장 혼란 방지, 증장기 자금 유치 촉진, 내부자 거래 근절을 통한 시장 신뢰도 제고 등에 목적
 - 전환사채·교환사채 등 주식 가치를 희석화시킬 수 있는 '기타 주권 성격 증권'에 대한 규제 적용이 불명확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5% 이상 대주주의 적용대상 및 신분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규제 회피 가능성이 상존
 - QFII·후강통 등 투자 경로 간 합산, 동일 운용사 내 펀드 간 보유 주식을 합산* 등의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 규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홍콩·싱가포르 등 경쟁 시장 대비 규제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대두
- * 외국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펀드 A 및 B가 특정 중국 주식에 대해 각각 4% 및 3%를 보유할 경우 독립된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합산된 7%를 기준으로 대주주로 판단

「단기차익거래 감독관리 규정」의 주요내용

■ 적용 대상 및 신분 판단 기준	▶ 매도 시점에 대주주·임원인 경우 매수 시점과 관계없이 규제 적용 - 적용 대상은 5% 이상 대주주, 이사·감사·고위임원 - 배우자·자녀 보유분 및 타인 명의 계좌 보유분도 해당 신분 보유로 간주
■ 적용 증권 범위 확대	▶ 주식 외 예탁증서(DR)·교환사채(EB)·전환사채(CB) 등 주권 성격 증권 포함 ('실질중시' 원칙) - 단, 서로 다른 증권 품종 간 교차 합산은 불인정하여 준법 부담 완화
■ 보유 지분 계산 기준	▶ 거래 시점은 증권 명의개서일(过户登记日)로 통일 ▶ 대주주 판단 시 국내외 발행 주식을 합산하되 QFII·후강통 등 모든 경로 보유분 포함 ▶ 홍콩중앙결제공사(HKSCC)는 명의상 대주주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
■ 전문 투자 기관 특례	▶ 공모펀드·연기금·보험 등 전문기관은 포트폴리오별 별도 계산 허용 - 해외 공모펀드도 동일 특례 적용('内外일치' 원칙) - 월간 단위 보고 의무 부과
■ 면제 사유	▶ ETF 설정·환매, 전환사채 전환, 상속·증여, 강제집행, 국유주 무상 이전 등 13가지 면제 상황 명시

[평가]

- 동 규정은 대주주·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공정성과 활력을 함께 제고할 것으로 기대
 - 적용 증권 범위 확대로 내부자 거래 규제의 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되어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
 - 공모펀드·연기금·보험 등 증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유동성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 - 기존 동일 운용사 내 펀드 간 합산 문제로 제약받던 외국인 자금의 투자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(중신건설증권)
 - '내외일치' 원칙을 통해 해외 공모펀드에도 국내 공모펀드와 동등한 특례를 부여하여 A주 시장의 글로벌 자산배분 대상으로서의 매력도 제고에 기여
- 그러나 사모펀드·신탁 등에 대한 규제 미적용의 형평성 문제, 역외 파생 상품 규제 공백 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
 - 사모펀드·신탁·은행 재테크 상품은 포트폴리오별 계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관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 존재
 - '실질중시' 원칙에도 불구하고 「파생상품 거래 감독관리 방법」이 아직 최종 발표되지 않아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